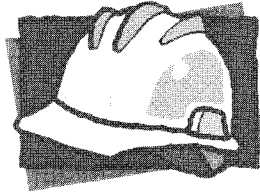


# 2004년 적용 건설업 노임단가



## 2003 하반기 평균임금 전년동기대비 3.4% 상승

대한건설협회(회장 馬亨列)는 전국의 1,700여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관련 146개 직종의 노임을 조사·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노임은 2003년 9월 한달간 실제 지급된 노임을 8시간 기준으로 조사한 것으로 발표일인 2004년 1월 1일부터 다음 노임이 조사공표되는 2004년 8월 말까지 건설공사 원가계산에 활용된다.

건설임금동향을 보면 평균이 91,649원으로 전년동기에 비해서는 3.4%, 상반기에 비해서는 1.8%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는 건설경기가 주택경기호조로 비교적 정상수준을 보였지만 실업이 크게 늘면서 건설현장의 임금상승으로 이어지지는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문별로 보면 주택 등 일반 토목·건축공사 물량 증가로 해당 공사직종의 노임 전년동기대비 상승율이 전체 평균보다 0.4%포인트 높은 3.8% 상승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재 및 원자력 관련직종은 현장감소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2.4%, 2.5% 증가에 그쳤다.



## 분야별 평균 임금현황

(단위: 원, %)

구분(직종수)	'03년 9월	'03년 5월	'02년 9월	등락율(%)	
				'03.5 대비	'02.9 대비
전체 직종	91,649	90,037	88,600	1.8	3.4
공사 직종	85,894	84,143	82,752	2.1	3.8
광전자직종	118,296	115,249	113,957	2.6	3.8
문화재직종	118,524	117,988	115,713	0.5	2.4
원자력직종	101,137	100,311	98,667	0.8	2.5
기타 직종	90,547	89,513	88,202	1.2	2.7

## I.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노임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4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  
번호 제 36504호

## 3. 조사기준

가. 조사기준기간 : 2003. 9. 1 ~ 9. 30

나. 조사실시기간 : 2003. 10. 1 ~ 10. 30

다. 조사범위 : 전국의 1,700개 건설현장

- (1) 공사 직종 : 건설업면허 소기업체의 현장
- (2) 전기 직종 : 전기공사면허 소기업체의 현장
- (3) 정보 통신 직종 : 정보통신면허 소기업체의 현장
- (4) 문화재 직종 : 문화재 보수 시공업체의 현장
- (5) 원자력 직종 : 원자력공사 시공업체의 현장

## 4. 조사방법

자계식 우편조사와 타계식 현장실사 병행 실시

## 5. 직종별 임금산출방법

$$\text{직종별 임금} = \frac{\text{직종별 조사된 총임금}}{\text{직종별 조사된 총인원}}$$

- 조사현장이 20개 이상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3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 이상 20개 미만인 경우 : 1차 평균금액을 중심으로 표준편차의 2배를 벗어나는 임금은 제거함

- 조사현장이 5개 미만인 경우 : 가공하지 않음.

## 6. 이용상의 주의사항

가. 통계전반에 걸쳐 사용한 「-」의 기호는 조사되지 않았거나 비교불능을 나타냄.

나. 본 조사노임은 1일 8시간 기준금액임.

다. 임금상승율산식

$$\text{상승율(\%)} = \frac{\text{비교노임}}{\text{기준노임}} \times 100 - 100$$

라. 다음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충분하지 못하므로 이용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 조사되지 않은 직종의 적용 방법



- 직전 가격에 전체직종 평균상승율을 적용하여 노임단가를 산정 사용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구 분	직 종 명	직종수
조사현장수가 4개인 직종	플랜트특수용접공, 플랜트제관공, 목도, S/W시험사, 목조각공, 한식목공조공,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7개
조사현장수가 3개인 직종	동발공, 보안공, 선부, 준설선선장, 준설선기관장, 준설선기관사, 준설선운전자, 제도사, 시험보조수, CPU시험사, 드잡이공, 원자력배관공, 원자력제관공, 원자력보온공	14개
조사현장수가 2개인 직종	준설선전기사, 원자력덕트공, 원자력케이블전공, 원자력계장공, 원자력특별인부, 노즐공	6개
조사현장수가 1개인 직종	없음	0개
조사현장수가 없는 직종	현도사	1개

## 7. 평균임금현황

<지수조정에 의한 물가연동시 노무비지수로 활용>

구 분 (발표일)	전체직종	직종별				
		일반공사 직종	광전 자 직종	문화재 직종	원자력 직종	기타 직종
2003년 9월 (2004.1.1)	91,649	85,894	118,296	118,524	101,137	90,547
2003년 5월 (2003.8.13)	90,037	84,143	115,249	117,988	100,311	89,513
2002년 9월 (2002.12.17)	88,600	82,752	113,957	115,713	98,667	88,202
2002년 5월 (2002.8.14)	82,197	76,040	107,501	108,667	94,878	81,496
2001년 9월 (2002.1.1)	75,874	69,615	95,320	101,713	92,079	74,716
2001년 5월 (2001.9.1)	73,559	67,236	92,729	99,382	90,049	72,890
2000년 9월 (2001.1.1)	72,485	65,871	90,933	101,977	87,888	73,274
2000년 5월 (2000.9.1)	72,400	65,541	90,928	102,855	87,876	74,847
1999년 9월 (2000.1.1)	71,137	64,449	90,442	106,140	83,241	71,270
1999년 5월 (1999.9.1)	70,730	64,306	90,283	102,509	83,396	70,543
1998년 9월 (1999.1.1)	70,179	63,608	89,092	104,196	82,570	69,868
1998년 5월 (1998.9.1)	71,458	64,775	95,268	101,316	85,023	71,461

※ 공사 직종 : 직종번호 1~105번  
원자력직종 : 123~138번

광전자직종 : 106~111번  
기타 직종 : 139~146번

문화재직종 : 112~122번



## II. 노임적용요령

### 1. 시중노임 적용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총리령 511호(1995.7.6)>

제7조(원가계산을 할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  
당 가격은 다음 각호의 1의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  
순서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1.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통계작성 승인을 받은 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단위당  
가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단위  
당 가격을 조사·공표한 경우에는 당해 가격
2. 제 10조제1호 내지 제3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가격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1호의 규정에 의한 가격을 적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노임단가에 동 노임단가의 100분의 1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  
술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처에 등록  
한 기능계 기술자격 취득자를 특별히 사  
용하고자 하는 경우
2. 도서지역(제주도를 포함한다) 및 오지개  
발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오지지역  
에서 이루어지는 공사의 경우

### 2. 노무비지수 정의

- 조사·공표된 해당직종의 평균치  
회계예규 (지수조정을 산출요령) 제2조(용어의 정  
의) 제3호 <1996. 4. 10 개정>

### 3. 노임 적용 시점

<재정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취>

- 예정가격작성시 또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  
액조정시의 시중노임 적용은 조사기관이 공표하  
는 시점을 기준으로함

### 4. 계속공사등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 정방법

<재정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취>

#### 가. 품목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1) 94년 이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계약체결시의 당해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  
(1+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  
임증가율)

- 다만, 종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  
정한 경우 : 직전 계약금액 조정기준일의 당해  
직종의 정부고시노임단가×(1+물가변동대상  
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가율)

- 또한, 위 “물가변동 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  
중노임증가율”을 산정함에 있어서 물가변동시  
의 시중노임이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 계약금액  
조정일의 시중노임보다 낮은 경우에는 당해  
“물가변동대상기간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증



가율”은 “0”으로 함.

- (2) 95년 이후에 계약체결을 하였을 경우
  - 물가변동시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
  - ※ 위 식중 “물가변동대상기간”은 계약체결시 또는 직전계약금액조정기준일로부터 물가변동 시까지의 기간을 말함.

- 나. 지수조정율에 의한 조정방법
  - 지수조정을 산출요령(재정부 회계예규 2200.04-137-3, 1998.3.31)에 의함.

**5.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의 시중노임 단가 적용시 참고할 사항**

〈재경원 문서번호 회계 45101-45(1995.1.13) 발췌〉

가.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에 규정된 작업에 종

사하는 직종(잠수부)은 1일 6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임.

- 나. 공표된 시중노임단가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노동자에게 일급으로 지급하는 기본급여액임.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시중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회계예규인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정한 바에 따라 계상하여야 함. 다만, 제조부문의 시중노임단가는 근로기준법 제45조에 의거 1월을 25일로 계산하여 산정된 것임.
- 다.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하지 않은 직종은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유사한 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준하여 적용할 수 있음.
- 라. 조사기관이 조사·공표한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가 없는 년도(또는 시기)의 경우에는 전후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시중노임단가에 그간의 전체 평균시중노임단가 증가율을 적용하여 해당년도(또는 시기)의 당해직종의 노임단가를 산정할 수 있음.

**Ⅲ. 개별 직종 노임단가**

번호	직 증 명	2003.9	2003.5	2002.9	2002.5	2001.9	2001.5
1	갱부	50,903	54,468	54,463	50,355	49,863	48,994
2	건축목공	87,481	89,931	86,872	78,068	69,086	66,753
3	형틀목공	92,242	92,041	91,573	79,997	71,251	67,648
4	창호목공	82,618	78,506	74,970	66,561	55,664	55,545
5	철골공	89,660	83,811	79,079	70,490	67,147	66,569
6	철공	90,908	85,952	85,754	75,336	63,963	64,286
7	철근공	93,842	96,310	93,853	84,113	73,192	70,167
8	철판공	83,753	79,446	81,995	76,518	64,601	59,175
9	샷시공	81,707	81,363	81,464	71,143	65,205	59,368
10	절단공	79,726	77,240	75,064	62,686	57,667	63,118



번호	직종명	2003.9	2003.5	2002.9	2002.5	2001.9	2001.5
11	석공	95,056	93,922	94,158	82,964	78,296	69,479
12	특수비계공	100,895	99,020	98,910	83,129	77,976	73,274
13	비계공	97,360	97,513	93,650	80,461	75,140	71,272
*14	동발공(터널)	67,311	67,654	64,424	60,415	56,000	60,263
15	조적공	85,904	83,302	83,651	74,460	66,461	61,286
16	치장벽돌공	86,484	85,233	81,817	73,307	62,612	61,878
17	벽돌(블럭)제작공	81,450	75,677	71,966	64,192	58,386	60,197
18	미장공	87,223	87,975	89,051	78,939	67,451	62,196
19	방수공	70,788	66,538	69,668	57,461	56,597	52,636
20	타일공	98,192	100,870	97,463	81,170	67,477	61,694
21	줄눈공	79,875	75,121	77,158	70,657	60,197	56,218
22	연마공	77,869	79,620	76,357	68,702	66,696	62,946
23	콘크리트공	88,153	87,613	90,048	77,157	68,884	67,489
24	보일러공	65,972	64,560	62,087	52,274	44,487	48,864
25	배관공	73,508	73,514	76,823	64,676	60,590	54,533
26	배관공(수도)	88,528	91,883	-	-	-	-
27	위생공	73,589	69,137	67,979	59,941	53,984	53,112
28	보온공	72,946	73,286	71,545	67,013	58,030	55,637
29	도장공	82,782	77,382	79,956	70,380	59,780	57,454
30	내장공	84,105	85,714	82,336	79,456	67,326	62,326
31	도배공	84,417	81,724	78,284	64,526	54,579	50,711
32	지붕잇기공	81,949	79,139	81,437	76,687	66,982	66,038
33	건출공	81,207	81,735	77,536	74,977	64,564	60,095
34	판넬조립공	83,201	80,749	77,022	69,879	59,771	63,694
35	화약취급공	81,540	81,573	88,068	78,393	73,666	66,179
36	착암공	68,402	65,785	62,427	58,322	56,840	54,280
*37	보안공	49,639	-	40,355	-	39,737	44,195
38	포장공	83,276	77,498	75,117	64,059	63,786	58,672
39	포설공	71,760	69,844	69,338	61,070	52,740	56,860
40	케도공	72,675	75,353	73,763	73,102	65,978	62,234
41	용접공(철도)	86,402	78,694	78,637	75,250	65,262	63,629
42	잠수부	103,094	99,415	100,665	92,469	91,893	88,034
43	보링공(지질조사)	68,006	64,752	65,692	57,812	51,152	46,378
44	조경공	74,905	70,973	68,999	61,271	60,423	55,700
45	벌목부	75,772	72,894	70,227	68,116	64,595	63,702



번호	직종명	2003.9	2003.5	2002.9	2002.5	2001.9	2001.5
46	조립인부	58,649	54,684	55,397	48,339	40,705	40,152
47	플랜트기계설치공	87,070	86,185	84,725	75,711	67,802	66,046
*48	플랜트특수용접공	107,487	111,865	109,022	101,262	89,849	85,784
49	플랜트용접공	92,780	88,116	88,312	77,855	65,712	62,886
50	플랜트배관공	94,175	90,775	89,935	77,614	69,836	63,034
*51	플랜트제관공	82,426	79,159	75,035	67,334	56,906	53,497
52	시공측량사	62,981	62,558	59,021	57,703	46,927	48,997
53	시공측량사조수	44,666	44,147	42,620	38,824	33,274	31,559
54	측부	38,725	38,098	36,149	31,786	30,212	31,179
55	송전전공	256,296	254,876	253,222	246,064	238,611	228,665
56	송전활선전공	291,495	288,263	284,000	281,277	279,149	273,511
57	배전전공	176,342	175,995	171,178	162,375	156,907	165,958
58	배전활선전공	251,315	249,319	247,705	242,256	236,090	222,274
59	플랜트전공	80,465	78,094	77,517	70,035	59,669	59,158
60	내선전공	77,372	74,199	72,268	66,042	56,143	53,401
61	특고압케이블전공	137,538	134,963	134,962	123,095	122,075	109,081
62	고압케이블전공	110,551	105,855	99,875	99,183	89,217	80,902
63	저압케이블전공	85,964	85,714	79,938	81,347	73,973	67,695
64	철도신호공	104,965	101,796	97,162	93,303	88,110	91,681
65	계장공	83,629	82,768	79,270	73,834	62,012	57,107
66	통신외선공	113,671	113,477	111,743	100,911	90,961	89,403
67	통신설비공	91,509	90,296	89,760	82,904	77,401	77,635
68	통신내선공	82,159	79,008	75,957	70,580	63,806	60,507
69	통신케이블공	116,681	112,799	114,666	106,043	95,424	94,873
70	무선안테나공	94,930	99,578	100,371	98,787	95,000	95,069
71	작업반장	69,773	69,514	69,109	64,905	63,904	58,657
*72	목도	75,609	79,926	77,076	70,798	67,725	65,052
73	조력공	63,399	66,584	63,043	59,862	52,283	45,775
74	특별인부	66,051	67,141	65,734	62,902	55,970	52,788
75	보통인부	52,374	52,483	50,683	45,031	40,922	38,932
76	건설기계운전기사	78,015	79,113	81,246	60,505	56,603	57,633
77	건설기계조장	85,318	83,161	87,216	78,291	68,228	66,191
78	운전사(운반차)	63,443	64,701	61,857	55,729	55,214	55,534
79	운전사(기계)	61,525	60,879	59,707	53,154	47,653	48,859
80	건설기계운전조수	49,488	51,861	53,719	50,520	43,994	44,975



번호	직종명	2003.9	2003.5	2002.9	2002.5	2001.9	2001.5
81	고급선원	87,190	85,000	83,989	75,129	65,527	63,465
82	보통선원	62,006	58,537	58,642	50,810	49,165	48,348
*83	선부	40,913	-	48,000	48,112	43,883	42,756
*84	준설선선장	86,560	84,211	84,922	86,555	77,731	71,491
*85	준설선기관장	80,865	75,789	77,395	76,505	68,798	71,301
*86	준설선기관사	64,117	63,158	63,014	65,784	56,920	55,913
*87	준설선운전자	68,993	67,368	65,768	61,727	56,831	54,347
*88	준설선전기사	63,626	62,439	63,981	55,735	51,756	54,471
89	기계설치공	69,484	68,477	67,007	66,078	57,749	54,468
90	기계공	62,214	61,664	58,291	56,132	49,113	50,809
**91	현도사	-	-	-	62,247	-	60,789
*92	제도사	64,391	64,000	62,965	53,621	51,818	54,433
93	시험관련기사(시험사1급)	59,796	58,923	57,903	52,618	52,142	46,634
94	시험관련산업기사(2급)	52,266	50,133	47,331	41,970	41,297	36,671
*95	시험보조수	40,673	-	37,789	36,480	34,308	32,484
96	유리공	76,752	77,851	77,104	72,411	66,670	58,873
97	함석공	74,277	71,725	69,049	61,893	63,308	61,305
98	용접공(일반)	82,490	81,112	79,947	69,775	63,468	60,389
99	닥트공	77,551	71,982	70,033	60,059	52,693	51,634
100	할석공	87,655	89,000	86,271	78,884	72,869	68,036
101	제철축로공	129,415	122,352	119,506	113,585	102,605	93,594
102	지적기사(지적기사1급)	117,742	113,829	109,524	103,376	98,423	97,558
103	지적산업기사(지적기사2급)	98,765	96,633	91,820	90,015	81,508	81,569
104	지적기능산업기사(지적기능사1급)	77,799	73,627	68,453	64,073	60,647	57,871
105	지적기능사(지적기능사2급)	61,492	56,108	54,339	50,714	45,735	44,111
106	H/W설치사	103,042	98,597	98,174	92,856	82,720	81,405
107	H/W시험사	117,777	116,161	115,185	106,630	89,846	88,498
*108	S/W시험사	125,795	122,160	121,567	115,612	98,026	98,454
*109	CPU시험사	111,646	108,804	107,074	103,195	88,355	86,879
110	광통신설치사	126,550	124,010	122,519	112,374	108,739	101,131
111	광케이블설치사	124,966	121,763	119,224	114,336	104,231	100,005
112	도판수	142,221	139,064	137,669	128,101	106,094	114,173
*113	목조각공	108,727	110,526	107,333	107,408	93,853	93,242
114	한식목공	116,974	115,271	109,115	103,133	88,290	91,540
*115	한식목공조공	77,683	75,815	74,172	74,440	70,383	63,750





번호	직종명	2003.9	2003.5	2002.9	2002.5	2001.9	2001.5
*116	드잡이공	115,088	117,031	117,073	107,186	104,894	100,000
117	한식외공	170,386	160,905	156,657	148,248	149,444	136,422
118	한식외공조공	115,632	114,141	109,827	100,928	101,281	90,129
119	석조각공	106,986	104,567	114,286	102,089	96,532	105,942
120	특수화공	154,303	159,186	154,545	143,333	133,493	118,338
121	화공	97,726	104,884	98,512	93,873	88,944	92,088
122	한식미장공	98,036	96,476	93,659	86,597	85,636	87,575
*123	원자력배관공	99,434	107,250	107,985	101,018	96,766	95,518
124	원자력용접공	108,898	108,486	109,000	99,637	99,944	95,314
125	원자력기계설치공	108,186	104,495	98,147	96,746	91,634	90,643
*126	원자력덕트공	89,006	93,200	92,497	90,880	90,726	87,579
*127	원자력제관공	86,371	84,818	85,747	82,666	85,710	81,226
*128	원자력케이블전공	95,940	95,200	90,833	89,087	87,150	86,496
*129	원자력계장공	88,816	85,000	83,708	82,098	76,509	78,849
130	원자력기술자	85,455	82,320	75,113	-	84,905	82,531
131	중급원자력기술자	98,667	94,275	92,889	91,057	92,182	89,064
132	상급원자력기술자	127,995	122,419	115,921	106,819	105,581	102,040
133	원자력품질관리사	115,823	113,580	110,937	105,578	94,169	94,015
*134	원자력특별인부	70,000	74,533	78,611	75,199	71,397	71,115
*135	원자력보온공	102,108	108,179	104,927	-	84,891	79,558
136	원자력플랜트전공	104,710	100,383	96,076	95,452	85,861	88,190
137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05,914	102,258	97,395	96,916	89,445	87,624
*138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130,869	128,583	138,883	135,096	136,394	131,022
139	통신관련기사(통신기사1급)	106,136	108,413	110,211	101,288	92,355	92,459
140	통신관련산업기사(통신기사2급)	100,760	101,796	101,160	93,385	91,949	86,709
141	통신관련기능사(통신기능사)	93,644	89,102	87,246	80,652	73,064	73,945
*142	노즐공	71,903	72,686	70,244	65,520	63,841	66,731
143	코킹공	79,407	81,129	78,498	68,776	61,248	56,412
144	전기공사기사(전기공사기사1급)	84,424	81,972	79,564	74,008	64,800	63,980
145	전기공사산업기사(전기공사기사2급)	76,461	74,333	73,543	70,109	62,990	58,372
146	변전전공	111,640	106,670	105,151	98,233	87,479	84,511

\* 표시 직종은 조사현장수가 5개 미만 직종으로 이용시 특히 주의하시기 바람

\*\* 표시 직종은 조사되지 않은 직종이므로 그 적용은 앞의 '이용상의 주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공사 직종 : 직종번호 1~105번,

광전자 직종 : 106~111번,

문화재 직종 : 112~122번,

원자력 직종 : 123~138번

기타 직종 : 139번~146번



#### IV. 직종해설

1. 갱 부 : 터널이나 갱(굴)속에서 토석 채취나 굴착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2. 건축목공 : 건축물의 축조 및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목수
3. 형틀목공 : 콘크리트타설을 위하여 형틀 및 동바리를 제작, 조립 및 해체작업을 하는 목수
4. 창호목공 : 건물에서 목재로 된 창 및 문짝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목수
5. 철골공 : H빔 BOX빔등 철골의 가공, 조립 및 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6. 철 공 : 철재의 가공, 조립, 설치 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 철근공 : 철근의 가공, 조립, 해체등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8. 철판공 : 철판을 주자재로 하여 제작, 가공, 조립 및 해체를 하는 사람
9. 샷시공 : 철재 창문틀, 샷시 또는 셋터를 제작, 설치, 해체하는 사람
10. 절단공 : 각종 철제를 소정의 규격으로 절단하는 사람
11. 석 공 : 대할 및 소할된 석재를 가공하여 형성된 마름돌과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하여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
12. 특수비계공 : 15m 이상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3. 비계공 : 15m 미만의 곳에서 비계,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등의 설치 및 해체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4. 동발공(터널) : 터널이나 갱내에서 동바리의 설치 및 해체를 하는 사람
15. 조적공 : 벽돌 및 블럭을 쌓기 및 해체하는 사람
16. 치장벽돌공 : 치장벽돌로 마감쌓기를 하는 사람
17. 벽돌(블럭)제작공 : 벽돌 및 블럭을 소정의 규격대로 제작하는 사람
18. 미장공 : 시멘트, 몰탈이나 회반죽, 석고프라스타 및 기타 미장재료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내외표면에 바른 작업을 하는 사람
19. 방수공 : 구조물의 바닥, 벽체, 지붕등의 누수방지작업을 하는 사람
20. 타일공 : 타일 또는 아스타일등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
21. 줄눈공 : 석축 및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
22. 연마공 : 인조석 및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하여 광택작업을 하는 사람
23. 콘크리트공 : 소정의 중량화 및 용적화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시멘트, 모래, 자갈, 물 비 비기와 부어 넣기 및 바이브레타를 사용하여 다지기를 하는 사람
24. 보일러공 : 보일러 조립·설치 및 정비를 하는 사람
25. 배관공 : 설계압력 5kg/cm<sup>2</sup> 미만의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배관등의 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
26. 배관공(수도) : 옥외(건물외부)에서 상·하수도, 공업용수로등의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
27. 위생공 :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작업을 하는 사람
28. 보온공 : 기기 및 배관류의 보온시공을 하는 사람
29. 도장공 : 도장을 위한 바탕처리작업 및 페인트류 및 기타 도료를 구조물등에 칠하는 사람
30. 내장공 : 건물의 내부에 수장재를 사용하여 마무리하는 사람
31. 도배공 : 실내의 벽체, 천정, 바닥, 창호등 실내표면에 종이나 장판지등 도배재료를 부착시키는 사람
32. 지붕잇기공 : 기와잇기 및 슬레이트를 절단·가공하여 지붕, 벽체, 천정등에 부착작업을 하는 사람
33. 견출공 : 콘크리트면을 매끈하게 마감공사를 하는 사람
34. 패널조립공 : P.C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자르는등 가공하여 조립 부착하는 사람
35. 화약취급공 : 화약의 저장관리 및 장진 발파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36. 착암공 : 착암기를 사용하여 암반의 천공작업을 하는 사람
37. 보안공 : 암석이나 구조물의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모



- 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경계 신호를 하는 등 보안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38. 포장공 : 도로포장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처리를 하는 사람
39. 포설공 :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
40. 케도공 : 철도의 케도부설작업 또는 일반공사장(사업장)내의 운반수단으로 임시 간이케도를 부설, 해체, 유지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41. 용접공(철도) : 열차운행선상에서 레일이음매부를 해체, 용접하는 사람
42. 잠수부 : 수중에서 잠수작업을 하는 사람
43. 보링공(지질조사) : 지하수 개발 또는 지질조사나 구조물기초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44. 조경공 : 수목 식재 및 조경작업을 하는 사람
45. 벌목부 : 나무를 베는 사람
46. 조립인부 : 상급기능사의 지시에 따라 수목의 식재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47. 플랜트기계설치공 :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 기계설비의 조립, 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48. 플랜트특수용접공 : 사용압력 100kg/cm<sup>2</sup> 이상인 배관, 압력용기 또는 합금강의 용접작업을 하거나 TIG, MIG 등 INERT/GAS ARC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49. 플랜트용접공 :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cm<sup>2</sup> 이상의 기계실배관, 플랜트기기 및 배관의 용접을 하는 사람
50. 플랜트배관공 : 유해가스 및 설계압력 5kg/cm<sup>2</sup> 이상의 기계실배관 및 플랜트배관 시공과 보수를 하는 사람
51. 플랜트제관공 : 정밀을 요하는 플랜트의 강제구조물과 압력용기의 가공, 제작 시공 및 보수를 하는 사람
52. 시공측량사 : 공사시공을 위한 전문측량사
53. 시공측량사조수 : 시공측량사를 보조하는 사람
54. 측 부 : 측량 pole이나 staff을 가지고 측량사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
55. 송전전공 : 발전소와 변전소 사이의 송전선의 철탑 및 송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56. 송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송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송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57. 배전전공 : 22.9kV이하의 배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주를 세우고 완금, 애자등의 부품과 기계류(변압기, 개폐기등)를 설치하고 무거운 전선을 가설 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사람
58. 배전활선전공 : 소정의 활선작업교육을 이수한 숙련 배전전공으로서 전기가 흐르는 상태에서 필수 활선장비를 사용하여 배전설비에 종사하는 사람
59. 플랜트전공 : 발전소, 중공업설비 및 플랜트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0. 내선전공 : 옥내전선관, 배선 및 등기구류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1. 특고압케이블전공 : 특별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7,000V초과)
62. 고압케이블전공 : 고압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교류 600V초과, 직류 750V초과 7,000V 이하)
63. 저압케이블전공 : 저압케이블 및 제어용 케이블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교류 600V이하, 직류 750V이하)
64. 철도신호공 : 철도신호기를 설치하는 사람
65. 계장공 : 기계, 급배수, 전기, 가스, 위생, 냉난방 및 기타공사에 있어서 계기(플랜트 프로세스 의 자동제어장치, 공업제어장치, 공업계측 및 컴퓨터등)를 전문으로 설치 부착 및 점검하는 사람
66. 통신외선공 : 전주, PE내관(전선관)포설, 조가선, 나선로등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7. 통신설비공 : 교환기기, 무선기기 및 반송기기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68. 통신내선공 : 전선설치, 실내배관, 배선 및 보수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69. 통신케이블공 : 각종 케이블의 가설, 포설, 접속연공 시험 및 보수공사에 종사하는 사람
70. 무선안테나공 : 철탑 각종 안테나의 설치 및 보수에



## 종사하는 사람

71. 작업반장 : 각 공종별로 인부를 통솔하여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십장)
72. 목도 : 2인 이상이 1조가 되어 인력으로 중량물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73. 조력공 : 숙련공을 도와서 그의 지시를 받아 작업에 협력하는 사람
74. 특별인부 :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정도를 요하며, 특수한 작업조건하에서 작업하는 사람
75. 보통인부 : 기능을 요하지 않는 경작업인 일반직역에 종사하면서 단순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76. 건설기계운전기사 : 각종 건설기계의 운전과 조작을 하는 운전자(12이상 트럭 포함)
77. 건설기계조장 : 건설기계조종원을 통솔, 지휘하는 사람
78. 운전자(운반차) :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자
79. 운전자(기계) : 발동기, 발전기, 양수기, 원치 등 경기계 조종원
80. 건설기계운전조수 : 건설기계운전사를 보조하는 사람
81. 고급선원 : 선박의 운항을 위한 각 부서의 책임선원
82. 보통선원 : 고급선원의 지시를 받아 선박의 운항에 조력하는 선원
83. 선부 : 선박운항을 위하여 선박에서 작업하는 일반 잡역부
84. 준설선선장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선장
85. 준설선기관장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장
86. 준설선기관사 : 준설기를 장치한 선박의 기관사
87. 준설선운전자 :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운전자
88. 준설선전기사 : 준설기를 장치한 준설기계 전기사
89. 기계설치공 : 일반기계설비의 조립설치, 조정, 검사 및 보수를 하는 사람
90. 기계공 : 기계의 점검정비 및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91. 현도사 : 공작물의 중요구조부분 제작을 위하여 원형대로 그리는 사람
92. 제도사 : 고안된 설계도면에 따라 도면을 깨끗하게

## 제도하는 기능인

93. 시험관련기사 : 각종건설자재의 조사, 시험, 분석, 측정확인, 보고서 작성등 제반품질 관리를 담당 처리하는 업무담당 총책임자
94. 시험관련산업기사 : 각종건설자재의 조사, 시험, 분석, 측정확인등 제반품질 관리를 담당 처리하는 사람
95. 시험보조수 : 시험기사, 산업기사를 보조하는 사람
96. 유리공 :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거나 끼우게 하는 사람
97. 합석공 : 합석을 가공제작하거나 조립하는 사람
98. 용접공(일반) : 산소나 전기 등으로 철재를 용접하는 사람
99. 닥트공 : 금속박판을 가공하여 통풍닥트의 제작, 설치작업에 종사하는 사람
100. 할석공 : 큰돌을 소정의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
101. 제철축로공 : 제철용 각종로(1,000°C~1,400°C) 내화물시공(R오차 ±1mm이내) 및 보수를 하는 사람
102. 지적기사 : 지적측량의 종합적 계획수립 등에 종사하는 사람
103. 지적산업기사 : 지적측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4. 지적기능산업기사 : 지적측량을 보조하거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5. 지적기능사 : 지적측량을 보조하거나 지적도 및 임야도의 정리와 등사, 면적측정 및 도면작성등의 업무에 3년미만 종사한 사람
106. H/W설치사 :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하드웨어 설치 및 시공지도 운영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7. H/W시험사 :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기계설비(하드웨어 포함)설치의 적정여부 및 시험, 분석, 운영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8. S/W시험사 : 전자교환기 및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및 프로그램 설계, 작성, 입력, 시험, 분석, 운영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09. CPU시험사 : 전자교환기용 컴퓨터 CPU 및 주변 장치(TTY, MTU등)에 대한 시험 및 운영, 프 로그 램의 분석,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0. 광통신설치사 : 광통신시설중 광전송장치(단말장 치, 중계기 포함) 설치 및 특성시험, 교정,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1. 광케이블설치사 : 광섬유케이블의 포설, 접속, 각종 시험, 시공 및 유지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112. 도편수 : 전통한식 건조물의 신축 또는 보수시 설계 도를 해독하고 한식목공을 총괄,지휘하며 여러 전문 직종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
113. 목조각공 : 목조불상, 한식건축물의 장식물인 포부 재, 화반,대공등의 조각을 담당하여 새김질 을 하는 사람
114. 한식목공 : 도편수의 지휘아래 전통한식 기법으로 목재마름질 등 목조건조물의 나무를 치목 하여 깎고 다듬어서 기물이나 건물을 짜세우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15. 한식목공조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치목, 조립을 하 는 사람으로 한식목공을 보조하는 기능자
116. 드잡이공 : 내려앉거나 기울어진 목조건조물, 석조 건조물을 바로잡는 일을 하는 사람
117. 한식와공 : 전통한식 건조물의 지붕을 옛 기법대로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으로 연와 공사를 총괄 지휘하는 사람
118. 한식와공조공 : 한식와공의 지도를 받아 전통한식 건조물의 기와를 잇거나 보수하는 사람
119. 석조각공 : 석조불상, 기단우석, 석탑 등 석조건조 물의 조각을 담당하는 사람
120. 특수화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 로서 안료배합 및 초를 낼 수 있고 별화를 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사람
121. 화 공 : 고유단청을 현장에서 시공하는 사람으로서 타분, 채색 및 색긋기, 먹긋기, 가칠등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122. 한식미장공 : 미장바름재(진흙,회삼물,강회등)를 사 용하여 한식벽체·양벽·온돌·외역기등을 전통기 법대로 시공하는 사람
123. 원자력배관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배관작업을 하는 사람
124. 원자력용접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용접작업을 하는 사람
125. 원자력기계설치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 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 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 보증 요구조 건에 따라 1차계통의 기계조립·설치 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
126. 원자력덕트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덕트의 제작·설치작업 을 하는 사람
127. 원자력제관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제관작업을 하는 사람
128. 원자력케이블전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 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 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규격 및 품질 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케이블시공 및 보 수작업을 하는 사람
129. 원자력계장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계장작업을 하는 사람
130. 원자력기술자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 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이 3년 미만인 사람
131. 중급원자력기술자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 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 3년 이상 6년 미만인 사람
132. 상급원자력기술자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에 비해 엄격한 원자력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설비 시공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기술자로 경력이 6년 이상인 사람
133. 원자력품질관리사 : 원자력 품질관리규정(10 CFR 50 APP.B)의 요건에 따라 소정의 교육을 이수후 관리사자격 취득하고 원자력관련 제규정 및 규격에 관한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 업무를 하는 사람
134. 원자력특별인부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 차 계통의 전문작업을 보조해 주는 사람
135. 원자력보온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1차계통의 보온의 제작 및 설치작업을 하는 사람
136. 원자력플랜트전공 : 원자력발전소 건설·보수시 원전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건설공사보다 엄격한 원자력 관련 제규정, 규격 및 품질보증 요구조건에 따라 발, 변전설비의 시공 및 보수작업을 하는 사람
137. 고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LEVEL II 면허소 지자(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비파괴분야 고급기술자)로 원자력 관련규정, 규격의 요구조건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기술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기, 배관 및 구조물 용접부위의 비파괴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138. 특급원자력비파괴시험공 : ASNT-TC-1A의 규정에 의한 LEVEL III 면허소 지자(또는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비파괴분야 특급기술자)로 원자력 관련규정, 규격의 요구조건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한 기술 지식을 보유하고 동 규정에 따라 시행되는 기기, 배관 및 구조물 용접부위의 비파괴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
139. 통신관련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140. 통신관련산업기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시험·측정·조정등에서 종사하는 사람.(광단말장치 및 광중계장치 제외)
141. 통신관련기능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상의 통신기술 자격자(기능사)로서 전기통신 설비의 유지 보수 및 엔지니어링 업무 보조자로 종사하는 사람
142. 노즐공 : 터널벽이나 절개지의 암벽에 쇼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
143. 코킹공 : 창틀, 욕조등의 방수나 고정을 위하여 코킹작업을 하는 사람
144. 전기공사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45. 전기공사산업기사 : 전기공사업법상의 전기기술 자격자(산업기사)로 전기설비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종사하는 사람
146. 변전전공 : 변전소 설비의 시공 및 보수에 종사하는 사람